2023년도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학생 인권 교육

인권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만나기

2023. 7.

익산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

아이의 인권보호, 이해와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1.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엎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예절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 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보자.

2.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1.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한다.

2.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된다.

3.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다 큰놈이 훌쩍거리긴!”,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 “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참 슬픈 일이야.”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준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낀다.

4.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라는 건 아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5.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계속 고함을 치며 발버둥치는 아이)

“(큰소리로) 잠깐 네 기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생각났다. 잠시만 기다려.”
(종이와 싸인펜을 가져와서) “이 종이에다 네가 화난 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렴.”
(아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린다) “아! 네가 정말 화가 났구나 더 그려볼래.”
(아이, 이번에 더 크게 그린다) “저런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아이 기분이 풀려서) “이젠 기분 좋은 모습을 그릴게요.”

6. 아이들이 스스로 비난하는 것에 동조도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 그대로 “너는 너를 바보같이 느끼는 구나.” 등으로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단다.”라는 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와 인권 〉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學生人權) 또는 학생권(學生權)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 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

1.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란?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인권 친화적 학교의 모습

- 학교 1 : 권리의 주체로서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학교 2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학교 3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학교 4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학교
- 학교 5 :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존중하고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학교
- 학교 6 :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가 마련된 학교

〈 간략히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인권협약 〉

1)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2조의 내용은 결국 교사나 부모 혹은 어른이 아이들과 이야기 할 때 아이를 자신의 의견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이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을 어른처럼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 결국 교사와 부모, 어른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의견들을 존중해야 한다.

2)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우리는 교실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표현의 기회가 충분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표현 방법들을 쉽게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은 음악/말하기/쓰기/미술/움직임 교육 등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소집단과 그룹 활동을 통한 협동 학습을 통해서 공동 표현 활동, 간용을 바탕으로 한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학급적 장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불충분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이나 판단도 일단 인정해 주어야 하면 아이들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선택하며 판단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4)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아동이 자신과 취미와 관심과 생각이 맞는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사귈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는 적극 권장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모임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올바른 활동을 활동의 길을 제시 해 주어야 한다.

5)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교사나 부모라 하더라도 간섭하고 침해해서는 안되며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집단 및 사회생활에서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6)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사회생활 및 행동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사나 부모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서 아동이 생활 및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수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7)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체벌 및 신체적인 벌 등 비인권적인 벌들은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8)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부나 생계를 위해서 아동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가정에서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습 활동에 의해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알아보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이 지켜야할 것을 정리하여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누려야할 인권의 내용을 공포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내용은(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인권자료방)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약속 "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제4조 / 인권은 정말 중요해-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인권 보장!

제5조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해 - 어른들도! 학생들도!

제6조 /제7조 공부는 즐겁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억지로 남아서 하는 공부는 No!

제8조 / 차별은 안돼! -학생들은 피부색이 어떻든, 여자든, 남자든, 어떤 종교를 믿든, 몸이 불편하든 아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디에 살든,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생각이 같든 다르든, 아팠거나 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든, 없든 ,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 No!

제9조 / 모든 폭력은 이제 그만 !
- 뺏기, 때리기, 놀리기, 괴롭힘 ,따돌림, 욕설, 기합주기, 체벌 등 날 무시하는 모든 것 OUT!

제10조/ 학교는 안전해야해!- 다칠 걱정없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제11조 /충분히 쉬고 문화를 누리는 것도 권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제12조 /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머리 모양이나 옷 차림으로 개성을 무시해선 안돼요! 단, 교복은 학생이 참여한 교칙으로 약속할 수 있어요.

제13조 ~제14조 / 나만의 비밀은 보호 받아야 해! - 동의 없이 일기,가방 검사No!
핸드폰 같은 전자 기기도 함께 사용규칙을 만들어가요!

제17조/ 어떤 생각을 할지는 나의 자유!-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쓰고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신문, 인터넷, 집회, 서명운동 등)

제18조~제20조 참여 할 수 있어야 해요!
- 학교 교칙, 교육정책 만들 때도 학생참여! 교육의 주인으로 성장하기 !

제21조~제25조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해!
- 깨끗한 교실과 화장실, 운동장 ,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실! 맛있는 급식!

제26조 징계를 받을 때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제27조 권리는 함께 지켜야해!

- 다른 사람의 인권도 함께 지켜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 비밀 보장!

제30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도 우리의 권리!

- 어른들도,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해요!

< 상담과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곳 >

전라북도의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때 상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교사 · 부모님의 실천 〉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1. 자녀(학생)의 사생활 존중하기

- ❍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3. 자녀(학생)의 인격 존중하기

-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 말 끊지 않기

4.자녀(학생)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 다른 자녀(학생)와 비교하지 않기

〈 자녀존중 십계명 〉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